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TOPIK팀에서는 홈페이지, 수험표 통해 수험생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공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응시자에게는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제7조에서 정한 “그 시험의 무효나 취소, 2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된 당해시험의 공고문 및 각종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 당일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신분증 규정 참고' )

## ■ 입실 시간 및 고사실 확인

- TOPIK I 경우, 오전 09:20 까지 입실(오전 09:30 이후 절대 입실 불가)
- TOPIK II 경우, 오후 12:20 까지 입실(오후 12:30 이후 절대 입실 불가)

## ■ 시험 진행 안내

- TOPIK I(오전)

시간	내용	비고
~09:20	입실	09:30 이후 입실 불가
09:20 ~ 09:50(30분)	답안지 작성 안내 & 본인 확인	휴대폰 수거

09:50 ~ 10:00(10분)	문제지 배부 및 듣기 시험 방송	
10:00 ~ 10:40(40분)	듣기 평가	
10:40 ~ 11:40(60분)	읽기 평가	2차 본인 확인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듣기 평가 후 실시

○ TOPIK II (오후)

시간	내용	비고
~12:20	입실	12:30 이후 입실 불가
12:20 ~ 12:50(30분)	답안지 작성 안내 & 본인 확인	휴대폰 수거
12:50 ~ 13:00(10분)	문제지 배부 및 듣기 시험 방송	
13:00 ~ 14:00(60분)	듣기 평가	
14:00 ~ 14:50(50분)	쓰기 평가	2차 본인 확인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듣기 평가 후 실시

14:50 ~ 15:10(20분)	쉬는 시간	
15:10 ~ 15:20(10분)	답안지 작성 안내 & 본인 확인	
15:20 ~ 16:30(70분)	읽기 평가	2차 본인 확인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듣기 평가 후 실시

※ TOPIK I은 1교시만 실시함

※ 시험실에 입실시간 내 반드시 입실. 입실시간이 지났을 경우 입실 불가.

※ 입실 지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음

#### ■ 시험 응시 관련

○ 시험 당일에는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시험시간 30분 전부터 입실 할 수 없다.**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음)

○ 환불 기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환불 처리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해당 성적은 무효처리 된다.

○ 시험 시간 중에는 신분증과 수험표를 자기 책상의 좌측 상단에 놓아야 한다.

○ 시험 시간 관리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 시험 시간 도중에는 퇴실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퇴실할 수 있다.

○ 시험 도중 질병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복도로 나갔을 때에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복도감독관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 TOPIK II 응시자는 2개 교시 중 어느 하나라도 결시한 응시생은 결시자로 처리된다.

○ 시험시간 중에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되며, 소란스럽게 하여서도 안 된다.

○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합격 결정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2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 ■ 본인 확인 절차 관련

○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규정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수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학생증 및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규정된 신분증의 사본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한국 내 응시자는 TOPIK 홈페이지에서 수험표 출력 기간 동안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한 뒤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수험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 감독관의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 ■ 반입 금지 물품 관련

○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실에 가지고 들어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한다. ※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 < 반입 금지 물품 >

가.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나.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

## ■ 답안지 작성 관련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낙서를 하거나 불필요한 표기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답안지 상·하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 문제지에만 답을 쓰고 답안지에 옮겨 적지 않으면 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 객관식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굵은 펜을 사용하고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한다. 불완전한 표기 또는 한 문항에 답을 2개 표기하는 경우 그 문항은 오답 처리한다. 객관식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잘못된 답안을 완전히 덮어 보이지 않도록 한다.
- 주관식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얇은 부분을 사용하여 반드시 정해진 답란 안에 작성해야 하며, 정해진 답란을 벗어나거나 답란을 바꿔서 쓸 경우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주관식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할 경우 감독관에게 조용히 손을 든다.
- OMR 답안지 작성을 잘못된 경우,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답안지는 제출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다.
- 답안지 작성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배부한 양면사인펜만을 사용한다.
-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채점결과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다.
- 시험 종료령이 울리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답안 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 종료 후 시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문제지 및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부정행위 적발 시 처리

-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안내 받는다.
-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해야 하며 해당 교시가 끝날 때까지

별도 장소에 대기한다.

-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자술서를 작성한다.
- 부정행위자는 관련 조치 종료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장에서 퇴장한다.
- 부정행위자가 당회차 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 단순 부정행위자는 당회차 시험이 무효이다.

< 단순 부정행위 >

-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다.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수험생이 따르지 않는 행위
- 라.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마.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가. 바.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물품 이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휴대 불가능물품을 보관한 행위

○ 계획적, 고의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해당 회차 시험 무효
- 부정행위 적발 해당 회차 시험의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 대리응시 등 악의적 부정행위자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학교 등)에 부정행위 적발 사례 통보

< 계획적, 고의적 부정행위 >

가.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나. 다른 수험생과 쪽지 교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사례

다. 폭력으로 다른 수험생을 위협하거나, 강압적으로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1)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응시하는 행위

2) 응시원서에 인적사항은 본인, 사진은 대리 응시자 것을 부착하여 대리응시자가 시험을 치는 행위

3) 응시원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시험은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4) 신분증을 위조하여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마. 휴대전화 이용 부정행위

1) 문자메시지 송.수신, 휴대전화 소지, 감독관 지시 불이행

2)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하고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가서 문자를 주고받아 그것을 적어 다시 시험장에 들어와서 답안지에 표기하는 행위

3) 여러 명이 나누어서 문제를 풀고 화장실에서 미리 약속된 외부인(시험을 보지 않는 친구, 선배, 가족 등)에게 문자를 보내면 그 사람이 종합해서 다시 문자를 보내주는 행위

4) 무선수신기를 이용하여 몰래 답을 듣는 행위

5) 카메라폰을 이용하여 인근 수험생의 문제지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타인에게 보내주는 행위

바. 소형 무전기 또는 유사 기기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수험생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행위

사. 성적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성적증명서를 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기타 유의사항

○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신원불명확자 서약서’를 작성한 수험자는 시험일 이후 3일 이내에 유효한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납부한 응시료의 환불 없이 시험이 무효 처리됨

○ 결시자, 신원불명확자(서약서 작성 후 기한 내 신분증 미 제출자), 부정행위자

등은 성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

○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임